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19가합1077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6. 7. 12. 10,000,000원, 2016. 7. 14. 34,000,000원, 2016. 8. 3. 200,000,000원, 2016. 8. 4. 56,000,000원으로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와 그의 어머니 C은 2001. 12. 6. 서울 성동구 D, E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B 3/4 지분, C 1/4 지분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B와 C은 위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형 공장 신축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2011. 6. 17.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9. 17.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으로 변경하였다.

다. B와 C은 2011. 6.경부터 2011. 7.경까지 토지대금 중 8,00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16. 6. 30. 시공사인 G 주식회사와 수탁자인 F 주식회사 사이에 위 사업의 종료 및 정산합의를 하면서 토지대금 잔금을 1,500,0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라. B는 2016. 7. 4. F 주식회사로부터 위 1,500,000,000원을 송금받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동생인 피고에게 합계 300,000,000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증여내역표

(단위 :원)

순번	거래일자	지급금액	입금계좌 (계좌주:A)	입금금액
1	2016. 7. 12.	10,000,000	신한 (계좌번호 1 생략)	10,000,000
2	2016. 7. 14.	34,000,000	신한 (계좌번호 1 생략)	34,000,000
3	2016. 8. 3.	200,000,000	하나 (계좌번호 2 생략)	200,000,000
4	2016. 8. 4.	56,000,000	하나 (계좌번호 2 생략)	56,000,000
합계		300,000,000	합계	300,000,000

마. 한편 B는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액 2,302,089,960원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체납내역표

(단위 : 원)

순번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1	양도소득세	2016	2016.07.31	2017.02.28	1,754,467,370	2,302,089,960
2	증여세	2015	2015.06.22	2017.02.28	68,396,580	89,736,100
3	증여세	2011	2011.06.22	2017.02.28	31,853,740	41,791,990
4	증여세	2016	2016.06.22	2017.02.28	34,273,400	44,966,680
5	증여세	2016	2016.07.04	2017.02.28	6,357,480	8,340,800
6	증여세	2014	2014.06.22	2017.02.28	61,939,470	81,264,480
7	증여세	2013	2013.06.22	2017.02.28	53,007,850	69,546,170
8	증여세	2012	2012.06.22	2017.02.28	56,692,620	74,380,660
합계					2,066,988,510	2,712,116,84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

1)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말일이다[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납내역표 순번 2 내지 8 기재 증여세 관련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각 성립하였고, 순번 1 기재 양도소득세의 경우 증여내역표 순번 1, 2 기재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토지 잔대금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016. 7. 31.)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위 증여계약을 하기 이전에 이미 B는 이 사건 토지 등을 F 주식회사 등에게 양도하고 토지대금 잔금 1,500,000,000원을 정산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B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자진납부를 하지 않음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한 이상 위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친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들 사이에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공제 등을 통하여 상속세 부담을 절감하고 관리 편의를 위해 부친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던 B와 모친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되 각자의 상속지분을 B와 모친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이후 B로부터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고 정산받은 잔대금 중 피고가 명의신탁한 상속 지분(2/11)의 대가로서 300,000,000원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는 토지 정산금 1,500,000,000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채납내역표 기재와 같이 고지세액 기준 2,066,988,510원의 조세채무가 존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B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 합계액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 이후 B에게 3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피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270,000,000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2. 27. B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금원이 증여금의 반환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이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써, 그 행사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채무자 B와 수익자 피고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가 B에게 원상회복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해당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수정, 판사 심 판, 판사 곽새롬